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일, 이해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 의원)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저지하여야 할 직분에 있는 현직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채용시부터 복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약류에 관한 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나아정 전문위원)

첫째, 이해식의원안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의 신체검사에 마약류검사를 포함하며,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마약류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마약류 단속·수사·규제 등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채용·재직 단계에서의 통제장치 강화를 통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둘째, 이미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같은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서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 등에 대한 약물검사를 신규 채용 시 신체검사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식의원안은 현행 하위법령상 운용되던 약물검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대한 검사 근거를 두고 있는 사례와 비교할 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두려는 점에서도 일정 부분 정합성이 인정됨.

셋째, 한편 마약류 투약 여부 등 검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신체와 건강정보에 관한 강제 처분에 해당하여 신체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바, 이해식의원안이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이라는 포괄적인 목적을 전제로 검사 대상과 시기·주기·방법·절차 등 핵심 사항 대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기본권 제한의 명확성·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특히 마약사범 단속·수사 등 마약류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서나 마약류 투약 등이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조직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과 함께 과잉규제·실효성 논란 및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검사 대상·사유·절차를 보다 구체화·한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